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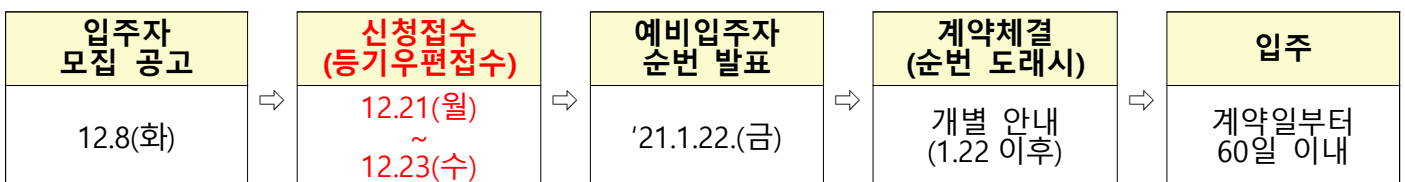
# [정정]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서울지역)

-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70%~80% 수준의 전세형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0.12.8(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동봉하여 신청지역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모바일 접수 불가) 신청지역에 따른 우편접수처 반드시 확인요함
- (중복신청 금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공고의 다른 지자체(시·군·구)에 중복 신청한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모집인원 수) 입주 가능한 주택의 2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구(區)별로 진행되며(예 : 서울 노원구/서울 양천구),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금회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이후 공가 발생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1 공급개요

### ■ 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 ■ 신청기간 : 2020. 12. 21(월)부터 2020. 12. 23(수)까지

- 신청접수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공고문에 안내된 원본 제출서류(5p 참고)를 모두 동봉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 접수처가 상이하오니 아래의 주소를 확인하시어, 해당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지역	접수처
서울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인의빌딩 10층
서울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LH 서울서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2층

■ 공급대상 주택 : 총 174호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1회 가능(최장 4년 거주) - 다만,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 연장가능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격(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공급</li> <li>•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li> </ul>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li> <li>- (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li> </ul>	
	임대조건	<table border="1"> <tr> <td>시중 시세 70%</td> <td>시중 시세 80%</td> </tr> </table>	시중 시세 70%
시중 시세 70%	시중 시세 80%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전환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이 전환후 임대보증금보다 높아질 수 없음)</li> <li>-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이율 : 연 2.5% (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li> <li>- (계산방법) 낮아지는 임대보증금 × 2.5% ÷ 12개월 = 올라가는 월임대료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가 1만원 높아짐</li> <li>* 다만,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제도(증액보증금)는 적용 불가</li> </ul>		

-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2

##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 동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예비 입주자 순번이 결정됩니다.

## ■ 소득 기준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월평균 소득 100%	2,645,147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 소득기준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동일)  
월평균소득은 세전금액으로,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 소득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단계	일정	내용
신청접수	12.21(월) ~ 12.23(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합니다.</li> <li>• 신청서 및 공고문상에 안내된 서류를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li> <li>• 신청서 오기입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내용을 숙지하신 후 본인이 직접 작성·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ul> <p>*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가능 (위임장 첨부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p>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순위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 및 세대원의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li> <li>•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li> </ul>
예비자 순번 발표	1.22(금) (17:00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발표되며, SMS(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li> </ul>
계약체결	개별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지정 가능한 주택과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li> </ul> <p>* 단,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li> </ul>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4

## 제출서류 안내

- 공고일(20.12.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 공통 제출 서류의 종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칸 작성 필요</li> <li>• (주의) 공급신청서 내용 확인 후 신청자 <b>본인이 작성하여 서명</b></li> </ul>	신청자 작성 [공사소정양식① 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b>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b></li> <li>*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li> <li>• (주의) <b>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b></li> </ul>	신청자 작성 [공사소정양식② 다운로드]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b>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b></li> <li>•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b>전부 표기되도록 발급</b></li> <li>*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li> </ul>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b>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b></li> </ul>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와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는 신청자 본인이 공사소정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추가 제출서류(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b>주민등록표등본 제출</b></li> <li>• (주의) <b>전부 표기되도록 발급</b></li> </ul>	행정복지센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li> </ul>	출입국 관리사무소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b>모집공고일 이후</b>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제출</li> </ul>	병원

# 5

##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우편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하여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li> <li>• 우편접수시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오기입시 당첨 탈락될 수 있고,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작성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신청접수 후에는 순위, 신청 지역 등 변경이 불가합니다.</li> <li>•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되며, 공고문에 안내한 모든 서류를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li> </ul>
임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된 주택내역의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li> <li>•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li> </ul>
주택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예비자 순번 발표 후 LH 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일정은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임)</li> </ul>
동호 지정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 건물별 호수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li> <li>•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모집단위에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li> </ul>
입주관련 (기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li> <li>•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li> <li>•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셔야 합니다.</li> </ul>

관련항목	유의사항
재계약 자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계약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li> <li>•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1회 가능하며(4년 거주),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1회 연장 가능합니다.</li> <li>•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棟)단위로 매입한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li> <li>• 지역수요, 주택특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지역편의시설의 활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li> <li>•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li> <li>•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입주하셔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LH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li> <li>•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li> <li>•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li> <li>•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li> <li>•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li> <li>•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li> <li>•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mp;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li> </ul>

## 6

##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공급대상지역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서울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인의빌딩 10층
서울 강서구, 구로구, 양천구	LH 서울서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2층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문의사항	LH 콜센터 1600-1004
인 터 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 <a href="http://www.LH.or.kr">www.LH.or.kr</a> ) → 청약센터( <a href="http://apply.LH.or.kr/">http://apply.LH.or.kr/</a> )

2020. 12. 8.



한국토지주택공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고객정보시스템 운영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

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 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소명 안내문 등의 e그린우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입주자적격검결과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같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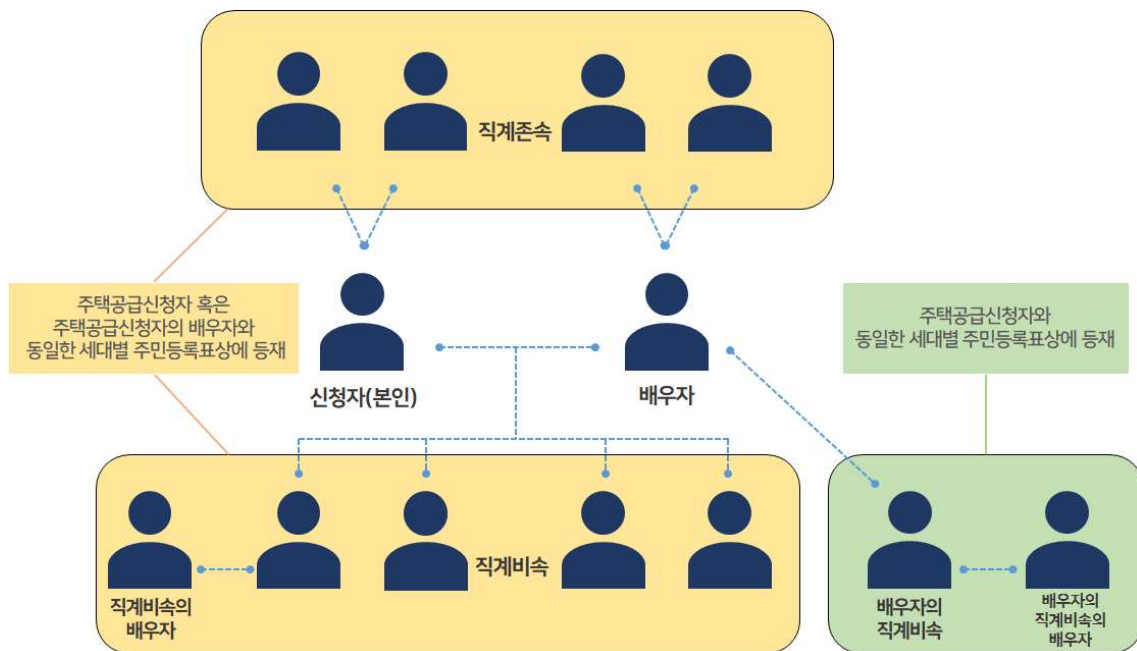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전세형) 세대구성원 작성범위

\* 세대구성원의 범위를 확인하신 후 제출 서류 시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의 배우자</li> </ul>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이하 '분리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의 직계존속</li> <li>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li> </ul>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의 직계비속</li> <li>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li> <li>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li> </ul>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소득검증대상 가구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항목 설명	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소득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 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